

화순군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2. 7.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2. 7. 19

다. 상 정 일 자 : 2002. 7. 19

(제10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)

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환경과장 궤 화 일

나. 개정사유

- '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
· 개선하여 쓰레기 종량제를 진 환경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함

다. 주요내용

- 종량제 적용범위 변경
 - 생활폐기물관리지역 중 소규모 농어촌지역은 쓰레기 적정 수기를 위하여 마을단위 종량제를 도입(안 제3조)
-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변경
 - 대형폐기물 배출시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(안 제6조)
- 쓰레기봉투의 제작
 - 수량·크기등을 확인후 검체를 부자위로 추출하여 시험기관에 의뢰 단체 표준 규격에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검수
(안 제8조)
- 쓰레기봉투 최종 판매가격 산출방법 변경(안 제14조)
 - 최종판매가격 = ℓ 당 처리비용 \times 봉투용량(ℓ) \times 주민부담율 목표치 + 봉투 제작비 + 판매이익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장헌범)

- 본 개정 조례안은 환경부의 “쓰레기종량제 개선종합계획” 및 “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시행지침”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의 개정으로서,
- 쓰레기봉투의 낱장판매 및 잔량 반쯤 등 보다 주민의 편의를 고려한 내용도 담고 있지만, 한편으로는 마을단위 종량제 및 수수료의 현실화 등의 내용도 담고 있어, 주민의 부담이 증가되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검토됨.
-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치는등 제정 절차상의 문제나 상위관련 법규와의 상충 여부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 답변 요지

“생략”

5. 토론요지

“생략”

6. 심사결과

“원안의결”

첨 부 :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종량제 적용범위)</p> <p>①~② (생략)</p> <p>③ (신설)</p>	<p>제3조(종량제 적용범위)</p> <p>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생활폐기물관리구역중 쓰레기 분리 배출 및 수거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에 대하여 마을 단위로 공동 수거하고 수거량에 따라 처리비용(종량제 봉투 기준)을 분배하는 마을단위 종량제를 실시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6조(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등)</p> <p>①~② (생략)</p> <p>③ <u>대형폐기물과 제1항의 단서에 규정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구술로 신고인의 주소, 성명, 배출일시, 배출폐기물명, 수량, 크기등을 미리 신고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6조(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등)</p> <p>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대형폐기물과 제1항의 단서에 규정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구술로 신고인의 주소, 성명, 배출일시, 배출폐기물명, 수량, 크기등을 미리 신고하고 별표5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.</u></p>
<p>제8조(쓰레기봉투의 제작등)</p> <p>①~③ (생략)</p> <p>④ <u>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공인시험기관(공업진흥청상등)의 표준규격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검수하여야 한다. 다만, 상시적으로 공공시험기관과 계약을 맺어 관리되고 있는 봉투 제조회사의 제품은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합격증의 첨부로 가름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8조(쓰레기봉투의 제작등)</p> <p>①~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수량, 크기등을 확인한 후 검체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시험기관(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시험기관 및 지방중소기업청)에 단체표준규격(한국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,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등)에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검수하여야 한다.</u></p>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1조(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준수사항)</p> <p>①~② (생략)</p> <p>③ <u>쓰레기봉투 판매인은 소비자가 구입한 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하며, 불량봉투는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.</u></p>	<p>제11조(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준수사항)</p> <p>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쓰레기봉투 판매인은 소비자가 낱장을 원할 경우 판매하여야 하며, 이 사등의 사유로 잔량의 봉투를 반품할 경우 즉시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하며, 불량 봉투는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.</u></p>